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22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한지아 · 박성훈 · 이현승
김 건 · 안상훈 · 백종현
서범수 · 김위상 · 조은희
서일준 · 조경태 · 김성원
김형동 의원(13인)

제안이유

축산부산물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원피, 뼈, 지방 등으로서 매년 상당한 물량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축산부산물의 상당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처리되고 있어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 농가 및 관련 업계의 처리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악취·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축산부산물은 바이오디젤 연료·산업용 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비료·사료·의약품·화장품 등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높은 자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처리·재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자원순환 및 친환경 산업

육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부산물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축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환경보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축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 다. 가축 또는 축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자 중에서 축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축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 라. 축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9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원화시설

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축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축산부산물”이란 가축이나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원피·원모, 뼈·뿔·내장, 지방·혈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부산물 재활용”이란 축산부산물을 식품·비료·사료·화장품·의약품 등 완성품의 원료, 공업용 제품 등으로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축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이란 축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축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이란 축산부산물을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축산부산물 처리업”이란 축산부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축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8.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란 축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축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대상 축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축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

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축산부산물 발생량

2. 연간 축산부산물 처리실적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계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축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① 가축 또는 축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자 중에서 축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축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축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축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축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축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① 시·도지사는 축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축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① 축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축산부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빌려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축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축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축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축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축산부산물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축산부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축산부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营业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지사가 사용하되, 축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처리업자는 그營業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축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축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축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처리·보관
2. 축산부산물의 자원화

3. 축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판매
4. 축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개발
5. 축산부산물 재활용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축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공업용 제품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부산물 처리업

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③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축산부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6.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부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축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축산부산물만 배출·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